

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1. 개정이유

-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 행정편의적 규정을 시민 편의 위주로 정비하고, 조례 시행 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설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복지관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중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통폐합하고 “건물 또는 그 시설물을 체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”의 경우는 “복지관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”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함 (안 제5조)
-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규정을 시장의 필요에 의한 사후점검 실시 규정으로 정비하여 사용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,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신고 있음 (안 제10조, 제11조)

3. 법적근거 : 없 음

4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1976. 3. 13일 제정되어 '96. 3. 1 이천시 승격과 더불어 지금까지 제정당시의 골자를 현행대로 유지해 온 조례안으로써 제2조의 복지관 위치와 제6조의 복지관 사용료는 현 운영체계에 불부합해 개정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은 물론,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 근거 없이 현재까지도 읍·면·동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.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5조(사용금지) 규정과 안 제10조의 (검사), 안 제11조『원상복구』 규정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있는바 본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.